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소
이*원	42-2016-20-0000836	프로호	910프로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99-2, (서홍동)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일시: 2025. 9. 26. (금)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 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